

四、出願、特許權 또는 特許에 關한 權利가 共有인 時 各共有者

第五十六條 第五十四條、第五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權者가 選任한 代理人의 姓名及住所는 特許證이 發行되기 前에 特許證에 記載하여야 함  
此姓名을 特許權者、其代理人 또는 承繼人의 代理權을 證하는 書面에 依하여 變更할 수 있으며 其變更는 規定의 手續料을 納付하여 登錄할 수 있음

第五十七條 第五十三條、第五十四條及第五十五條에 規定한 代理人의 選任 또는 變更는 規定한 手續料을 納付하여 登錄할 수 있음 但 特許出願의 提出과 同時에 選任할 時는 手續料은 要치 않음  
第五十三條、第五十四條及第五十五條에 規定한 代理人의 選任 또는 變更는 登錄하지 않는 限 此는 第三者에 對한 特許를 不得함

第五十八條 本人이 代理하여 出願、請求 其他 手續을 하는 代理人 또는 辯理士의 選任、變更 또는 代理權의 變更消滅은 特許局에 届出치 않는 限 特許局에 對한 特許를 不得함

第五十九條 特許에 關한 出願、請求、其他 手續을 하는 出願者、特許權者 其他에 依하여 選任된 者 또는 選任되 或 已 看做되는 辯理士、辯護士 其他 代理人의 代理權은 本人의 死亡 또는 能力의 喪失、本人인 法人의 合併에 因한 消滅、本人인 受託者의 信託의 任務終了 또는 法定 代理人의 死亡 能力의 喪失 또는 代理權의 變更消滅에 因하여 消滅치 않음

第六十條 特許出願 또는 特許에 對한 代理人이 致人인 時는 特許局에 對하여는 各人이 本人을 代理함

第六十一條 局長은 特許出願 또는 特許에 關한 代理人이 不適當하다 且 認定할 時는 其改任을 命할 수 있음  
局長 또는 審判長은 當事者、參加人、特許異議申立

人 또는 其代理人이 陳述 其他 手續을 進行할 能力이 無하다 且 認定할 時는 代理辯理士의 選任을 命할 수 있음  
前二項에 規定한 命令이 依하여 不適當하다 且 認定한 代理人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異議申立人이 特許局에 對하여 行爲는 此은 無効로 할 수 있음 但 手續을 하는 權利는 其無効로 因하여 喪失치 않음

第六章 審査、異議及特許許與

第六十二條 規定한 手續料을 納付한 新特許出願이 受理되었을 時는 局長은 特許局에 專屬한 者는 第六十三條及第六十四條에 依하여 特許局에 派遣된 有能한 審査官을 시켜 申請新發明 또는 考案에 對하여 慎重한 審査를 함

第六十三條 商務部長은 局長이 本法의 規定을 施行하기 爲하여 要求하는 左記行爲를 遂行할 權限을 有함  
一、特許出願에 關한 商務部의 情報을 局長에게 提供함

二、特殊問題에 關한 調査를 商務部의 當該課 또는 機關에 通하여 指導함  
三、技術上有能한 職員을 臨時的으로 局長에게 派遣함

第六十四條 政府首席은 農務部長에게 植物特許에 關한 本法의 規定을 施行하기 爲하여 局長이 要求하는 第六十三條第一號、第二號及第三號에 規定한 行爲를 遂行하도록 命할 수 있음

第六十五條 第六十四條의 規定은 同條第一項第六號의 規定을 除外하고 審査官의 除斥에 對하여 此은 準用함

11 개 소 11

方에在住하는者를爲하여請求에依하여或는職權을  
으로特許局에對한手續、答辯、審定請求或는批告  
發定期間을延長할수있음 但本條의規定은第二  
十四條、第二十五條、第五十條、第八十三條及第  
百五十七條第二項、第三項及第四項에規定한法定  
期間에는此를適用하지않음

第四十九條 二以上の發明、考案을包含한特許出願  
을二以上の出願으로分割하였을時는各出願을最初  
의出願當時에한것으로此를看做함

第五十條 條約、協定 또는法律에依하여我國民에게  
同種의特權을許與하는外國에發明、考案의特許는  
는實用的型、産業的英或는模型的登錄을出願한後  
同一한發明考案의特許를我國에出願한時에는其  
出願은外國에出願한當時에한것으로看做함 但我  
國에한出願은第十八條第十九條及第二十條의規定  
에該當할時는外國에出願한日부터十二月以內에第  
二十一條에該當할時는同六月以內에提出하여야함

第五十一條 規定한手数料를納付하여發明特許出願  
 또는美匠特許出願을實用特許出願으로實用特許出  
願項의規定에依한變更出願은其最初出願日附屬保  
持한第一項의規定에依한 變更出願은一回에限한

第五十二條 發明 또는考案의出願者가數人이어其中  
一人 또는其以下의發明、考案에關係가無함이明白  
하여局長이此를證明하면該證明은認定한後該證明은出願者  
는新誓約書를提出하여其發明、考案에關係가無한  
者의姓名을削除하여出願을變更할수있음

出願後一人 또는其以上の發明者 또는考案者의名稱  
을追加하여야한時局長이此를審定에依한後該  
證明은認定할時는出願者는新誓約書를提出하여  
他發明者 또는考案者의姓名을追加하여出願을變更  
할수있음

出願以前二項의規定에依하여變更할時에는其變更  
出願은最初出願日附屬保持함

第五章 代理人及代表者

第五十三條 數人이共同하여特許에關한出願請求其  
他手續을한者 또는特許權의共有者는特許局에對하  
여各人和五代表함 但特許代表者를定한特許  
局에出願할時는此를適用하지않음

第五十四條 出願者가國內에居住할時는願書에國內  
의住所를記載한後國內에居住하지않는時는本法及民  
事訴訟法規定에依한手續、出願 또는特許에關한一  
切行爲를代表代理할國內居住者를選任하여其姓名  
住所及國籍을屬出하여야함

國內에居住하지않는出願者가出願에關하여國內에居  
住하고特許局에登錄된辨理士를選任할時는其辨理  
士는前項의規定에依하여選任된代理人으로看做함  
國內에居住하지않는者가國內에居住하는者의代理人이나  
辨理士를選任하지않고國內에居住하는者와共同出願  
할時는國內에居住하는共同出願者各人은出願者의  
代理人으로看做함

第五十五條 國內에居住하지않고特許出願 또는特許에  
關한利益 또는權利를取得한者는本法及民事訴訟法  
의規定에依한手續、出願 또는特許에關한一切行爲  
를代理할國內에居住하는代理人을選任하여야함  
但本條의代理人을選任하지않는時는左記各號의一에  
該當하는者를代理人으로選任한것으로看做함

- 一、取得權利益及權利의前所有者
- 二、第一號以前所有者가第五十三條、第五十四條  
 또는本條에依하여選任한代理人
- 三、第一號의所有者가選任하여其選任이登錄된  
는登錄된代理人

良正는結合을特히指摘하고明示하여야함  
植物特許는其記載가充分인完備된境遇는前項의  
規定을適用치않음

明細書는發明者考案者 또는第四十六條에依하여  
署名捺印한權限을有한者가署名捺印하여야함

第四十一條 明細書의終末에는出願者가新規한다는  
趣旨을記載하고特許를請求하는目的物 또는其結合  
物請求範圍을明白히記載하여야함

附記請求範圍은先行請求範圍單一項에屬할수있  
음

第四十二條 機械、植物、産業的物、美匠或은其  
他發明의圖面으로說明할수있는境遇에는明細書에  
는局長이規定한形式及數의圖面을添付하여야함

第四十三條 發明은考案의模型化할수있는境遇에  
는出願者는局長의要求에依하여各部分을適當의表  
示한模型을提出하여야함

發明이物質의合成인境遇에는出願者는局長의要求  
에依하여試驗함에必要한處分과合成의見本을提出  
하여야함

第四十四條 特許出願은發明者、考案者 또는特許受  
得할수있는權利의承繼人이提出하여야함 但特  
許를受得할수있는權利의承繼人이提出하여야함  
但特許를受得할수있는權利가共有인時는共有者가  
共同出願을하여야함

第四十五條 特許出願에는特許許與를願하는發明、  
考案의名稱、發明者及出願者의住所、姓名及國籍  
을記載하여出願者가其發明考案의特許를受得할수

있는資格이있다는趣旨을記載하여야함 但第五十  
四條에依하여我國에居住하는代理人의必要한時는  
其代理人의住所、姓名及國籍을記載하여야함

第四十六條 特許出願에는發明者 또는考案者自身이  
其發明、考案에眞實한最先의發明者 또는考案者이  
며其發明考案이特許法에規定된新規하고思惟하는  
趣旨을記載하여虛偽時는刑罰을受한다오盟誓하여  
署名捺印한誓約書를添付하여야함 但發明者 또는  
考案者가出願中에死亡 또는無能力이될時는其法定  
代理人의其概況을適當히變更하여誓約함

第四十七條 特許出願은其出願後六月以內에其手續  
을完了한日算起에對한準備을마쳐야함 이것을欠  
缺한境遇는通知를受한特許局의處置後六月以內  
에出願에對한爾後의行爲를懈怠한境遇에는此는  
抛棄한것으로看做함 但局長은其處置에따라右爾  
後의行爲를怠期間을四十日以上の期間으로短縮할  
수있음

出願者는爾後의行爲의懈怠가當事者의責에歸할수  
없다오認定되고右行爲를할수있는日부터四十日以  
內에右處置에對한請願書、答辯書를提出하면出願  
者는規定의料金を支拂하고局長에對하여抛棄된것  
으로看做된日부터六日以內에請願書를提出하여抛  
棄된出願回復을할수있음

前節에依한出願의圖面은其原出願日附를保持함  
第四十八條 局長은外國이나遠隔或은交通不便한地  
區를發明特許出願 또는美匠特許出願으로各各變更  
할수있음 但最初出願의拒絕査定確定前에變更出  
願을하지않는境遇에는本項의規定을適用치않음

# 特許法 (法令 第91號)

(改正 檀紀 4285年 4月 13日)  
法律 第238號

이 資料는 古本과 舊官報에서 複製하여 原型대로 掲載하므로 페이지의 順序가 거꾸로 되었음을 밝히면서 錯誤없기 바란다.

承前

商務部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局長의 意見과 諮議를 受할 時는 特許補償審査委員會를 任命하고 其報告에 依하여 補償額을 定함 本項의 手續에 關하여는 第九十一條乃至 第九十三條의 規定을 準用함

商務部長이 本條에 規定한 補償金額을 定할 時는 有效期間이 一年以內의 秘密命令으로 生한 損害 또는 發明考案을 政府에서 또는 政府을 爲하여 使用함으로 因하여 生한 損害에 對하여는 此를 參酌치 않음 但 本條의 規定은 出願한 出願者 또는 特許權者가 政府에서 또는 政府을 爲하여 發明考案을 使用함으로 因한 損害에 對하여 政府으로부터 補償을 받을 權利를 拋棄할 權限은 此를 適用치 않음

第三十六條 國內에서 發明 또는 考案된 發明 또는 考案에 關하여는 別段의 規則은 規程에 依하여 局長의 許可를 받지 않음 限外國에 特許, 實用的 型, 産業의 美匠 또는 模型의 登錄을 出願함을 不得함 但 本項은 朝鮮이 戰爭期間中에 限하여 有效함

前項에 規定한 許可이 前項 規定에 該當한 發明考案에 對하여 特許, 實用的 型, 産業의 美匠 또는 模型의 登錄을 外國에 出願한 者及其 承繼人은 其 發明考案에 對하여 我國의 特許를 得지 못함 右 禁止에 違反한 者 또는 其 承繼人이 許與된 朝鮮의 特許는 無效로 함

第三十七條 第十八條, 第十九條의 規定에 該當한 發明 또는 第二十一條의 規定에 該當한 考案을 特許한 政府에 依하여 또는 政府을 爲하여 使用될 것을 確認할 時는 手數料, 登錄料 또는 特許料을 支拂치 않고 特許를 受할 수 있음 但 出願者는 其 發明考

案이 特許되면 特許權 使用料 없이 政府에 依하여 또는 政府을 爲하여 製作 使用되 어 도 可하다 는 趣旨을 特許에 記入하여야 함

第三十八條 特許局 職員은 在職中 特許局에서 許與된 特許에 關한 權利와 利益을 直接으로 나 間接으로 나 要求, 取得함을 不得함 但 補償 또는 遺贈에 依한 時는 本條의 規定은 此를 適用치 않음

第三十九條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有하지 아니한 外國人은 特許權, 特許에 關한 權利를 享有함을 不得함 但 條約 協定 또는 法律에 依하여 我國民에게 自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不拘하고 右 權利를 許與하는 國家의 國民에 對하여는 本文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 第四章 出 願

第四十條 特許를 受得코 者는 局長에게 願書를 提出하는 同時 明細書를 特許局에 提出하여야 함 其 明細書에는 其 發明 또는 考案이 屬한 또는 此와 密接한 技術科學의 專門家가 發明考案을 製作, 構成, 合成 또는 使用 實施할 수 있는 程度 또는 左記에 依하여 發明考案及其 製作, 構成, 合成 또는 使用의 各樣態를 完全, 明確, 簡單히 記載하여야 함

- 一、機械에 關하여는 其 原理及其 原動力을 應用한 最善의 方法
- 二、方法에 關하여서는 他 發明과 區別하기 爲한 諸工程及 必要한 順序
- 三、美匠에 關하여서는 表現할 物品을 指定하여야 함
- 四、出願者는 發明考案의 請求範圍으로서 其 要部, 改